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55

제출년월일: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『지방공무원법 제77조』 및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』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교육·연수를 통한 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·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·복지시설로써

나. 민간위탁 기간이 2022. 12. 31.일자로 만료(예정)됨에 따라,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재계약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

○ 필 요 성 : 연수원은 신임자 교육, 부서세미나, 워크숍 등 교육·연수와 직원들의 휴양·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토록 합으로써

-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- 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
 -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 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
 - 수안보 지역 교육 및 협력 등
- 라. 위탁시설 개요
 - 위 치 :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
 - 건물면적 : 연면적 21,731m², 지하2층~지상6층, 4개동
 - 부지면적 : 59,815 m²(대지 : 34,764 m², 임야 : 25,051 m²)
 - 연수시설 : 객실(110실)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- 편의시설 : 식당, 매점, 사우나, 야외 수영장, 노래연습실, PC방 등
- 마. 민간위탁기간 : 2023. 1. 1.~2025. 12. 31.(3년)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-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- 소요예산 : 3,389백만원 / 년
 - 산출근거 : 충북형 생활임금, 물가 및 운영비용(유류단가, 전기, 가스 등) 상승률 반영 및 정원 증가 등
- 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 - 심 의 일 : 2022. 7. 20.(수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법
 - ▶ 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▶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 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- ▶ 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·구내식당·매점
 - 2.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치과진료실 체력단련실
 - 3.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·연수원·콘도 등의 확보 운영

▶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

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기타사항

〈 그 간의 위탁경과 〉

- 수안보연수원 개원 : '08. 7. 11.
- 최초위탁(1차): '08. 6. 1.~'11. 5. 31. (수탁업체: ㈜HTC)
- 재 위 탁(2차) : '11. 6. 1.~'14. 5. 31. (수탁업체: ㈜HTC)
- 재 위 탁(3차): '14. 6. 1.~'17. 5. 31. (수탁업체: ㈜오브이룸스)
- 재 위 탁(4차) : '17. 6. 1.~'19. 12. 31. (수탁업체: ㈜오브이룸스)
- 재 위 탁(5차) : '20. 1. 1.~'22. 12. 31. (수탁업체: ㈜오브이룸스)

※ 작성자 : 인력개발과 후생팀 고범주 (☎ 2133-5783)